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근로복지공단의료 산하지부 운영규정

2013년 4월 15일 제정  
2014년 4월 30일 개정  
2016년 3월 24일 개정  
2017년 11월 23일 개정  
2018년 3월 22일 개정  
2019년 3월 5일 개정  
2020년 5월 14일 개정  
2020년 10월 28일 개정  
2021년 3월 23일 개정  
2022년 3월 4일 개정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복지공단의료본부지부규정(이하 “규정” 이라한다) 제1조 및 제7조 3항에 의거 근로복지공단의료 본부지부 산하 지부(이하 “지부” 라 한다)의 제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지부의 의결사항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고, 지부 조합원의 근로조건개선과 특수문제를 해결하며 지부의 합리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7.11.23.)

**제2조(적용범위)** 지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소)** 지부의 사무소는 근로복지공단 소관 사업소 내에 둔다.(개정2017.11.23.)

### 제 2 장 조 직

**제4조(구성)** 지부 조합원은 사업소에 근무하는 근로복지공단 직원 중 본부지부 운영규정 제 6조에 의거 조합원이 된 자로서 구성한다.(개정2014.4.30., 2022.3.4.)

**제5조(가입원서)**

- ① 산하지부운영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는 소정양식의 가입원서를 지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7.11.23.)
- ② 지부장은 제출받은 가입원서를 1부 복사하여 사본은 소속지부에 보관하고, 원본은 근로복지공단의료 본부지부(이하 “본부지부” 라 한다)에 제출한다.(개정2017.11.23.)
- ③ 지부 조합원이 다른 지부로 전출시 전 소속지부의 지부장은 보관하고 있는 가입원서 사본을 해당지부의 지부장에게 송부한다.

#### 제6조(이동 및 파견)

- ① 지부장은 지부조합원이 다른 지부로 전출하였거나 다른 지부로부터 전입하였을 경우 당해 조합원의 인적사항과 이동사유를 발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부지부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2017.11.23.)
- ② 지부장은 소속조합원이 1개월 이상 타 지부로 파견됐을 경우 해당조합원의 인적사항과 파견지 및 기간을 7일내에 본부지부에 보고해야한다.
- ③ 2항에 해당된 조합원은 파견된 지부 조합원으로 소속되며, 본부지부는 해당조합원의 교부금을 파견지부에 지급한다. 단, 연구소지부 소속 조합원은 제외한다.(개정2018.03.22.)
- ④ 공로연수 조합원은 공로연수 들어가기 전 소속 지부 조합원으로 하며, 본부지부는 해당 조합원의 교부금을 해당 지부에 지급한다.(신설2020.5.14.)

**제7조(명단비치)** 지부장은 지부사무실에 지부 조합원 명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본부지부에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 3 장 지부 조직기구

**제8조(지부임원)** 지부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지부임원을 둔다.

- ① 지부장 1명
- ② 부지부장 2명 이내(개정2019.3.5., 2021.3.23.)
- ③ 사무장 1명
- ④ 회계감사 2명

**제9조(지부임원의 임기 및 결원 시 처리)**

- ① 지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개정2019.3.5.)
- ② 지부장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사퇴하였을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직무대행체제로 지부를 운영할 수 있다.

- ④ 지부장 이외의 지부 임원이 임기 만료 전에 결원된 경우에는 지부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2016.3.24.)

### 제10조(지부임원의 선출)

- ① 지부 임원 중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동반출마)의 선출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한다.
- ② 지부 임원중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동반출마)의 선출은 지부의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인의 과반수의 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2020.5.14.)
- ③ 위 항 에도 불구하고 수석부지부장이 임기 중에 사퇴 혹은 공석 시 에는 지부대의원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진행하며 재적대의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대의원 과반수 득표에 의하여 선출한다.(신설2016.3.24., 개정2019.3.5.)
- ④ 지부 임원 중 정책부지부장, 사무장의 임명동의는 지부장이 추천한 후보자에 대하여 지부대의원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진행하며 재적대의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대의원 과반수 득표에 의하여 선출한다.(개정2016.3.24., 2019.3.5., 2021.3.23.)
- ⑤ 지부 임원 중 회계감사는 지부대의원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진행하며 회계감사 후보등록자 혹은 대의원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 참석, 후보자별로 찬반투표를 통한 참석 대의원 과반수이상 다수 득표순으로 2인을 선출하며, 최다득표자가 수석회계감사가 되며, 차점자는 일반회계감사가 된다. 단, 동수일 경우 연장자를 수석회계감사로 한다.(신설2016.3.24., 개정2022.3.4.)

### 제11조(지부임원의 임무)

- ① 지부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지부를 대표하고 일체의 지부업무를 지휘, 감독하고 지부공문서의 명의인이 된다.
  - 2. 지부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 3. 지부의 부장, 차장을 임면한다.
  - 4. 지부의 각종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신설2020.5.14.)
  - 5. 지부 노사협의회 및 각종위원회의 조합측 위원의 임면권을 갖는다.(신설2020.5.14.)
  - 6. 지부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신설2020.5.14.)
- ② 부지부장은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유고시 지부장의 업무를 대행하며 부지부장이 2명인 지부는 부지부장 중 수석부지부장, 정책부지부장 순으로 지부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2019.3.5., 2021.3.23.)
- ③ 사무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지부장의 지시를 받아 각 부장을 지휘, 감독한다.
  - 2. 지부 재정의 운용책임자가 된다.
  - 3. 지부의 사무 및 회계감사에 응한다.
  - 4. 지부장 및 부지부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지부회계감사는 수석회계감사 1명과 일반회계감사 1명을 두며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16.3.24.)
  - 1. 사업 제반에 따른 재정 및 회계를 감사하며 그 의견을 지부총회(또는 지부대의원회)에 제출한다.(개정2016.3.24.)
  - 2. 제반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표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제12조(지부임원의 사퇴)** 지부임원의 사퇴는 사퇴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개정2016.3.24.)

**제13조(지부보고)**

- ① 지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본부지부에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 1. 지부의 각종 회의의 결과보고
  - 2. 지부의 재정에 관한 사항
  - 3. 지부의 조직현황
  - 4. 지부의 제반활동사항
  - 5. 지부 조합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 6. 기타 본부지부가 특별히 지시하는 사항
- ② 전항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 내지 제4호는 매월 말 현재로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지부장은 관외에 3일 이상 장기출장 등으로 지부장의 업무공백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일로부터 3일전에 본부지부장에게 보고하고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일로부터 24시간이내에 직무대행자가 본부지부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대행한다.

**제14조(지부의 부서)**

- ① 지부의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책기획부(개정2021.3.23.)
  - 2. 총무부
  - 3. 조직부
  - 4. 교육부
  - 5. 대외협력부
  - 6. 선전부
  - 7. 노동안전부
  - 8. 성평등부(변경2019.3.5.)
  - 9. 단체교섭부
  - 10. 청년부(신설 2019.3.5.)

11. (삭제2021.3.23.)

12. (삭제2021.3.23.)

13. (삭제2021.3.23.)

② 지부장은 필요시 각 부서의 부장 밑에 차장을 둘 수 있다.

**제15조(부서의 담당업무)** 부서의 담당업무는 조합의 처무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개정2017.11.23.)

**제16조(부, 차장의 임무)**

① 부장은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수행한다.

② 차장은 소속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수행한다.

**제17조(부, 차장의 임면)**

① 부장은 지부장이 임면하고 본부지부장에게 보고한다.

② 차장은 지부장이 소속부장과 협의하여 임면한다.

## 제 4 장 지부의 기구

**제18조(지부의 회의체기구)** 지부의 기구는 다음과 같다.(개정2016.3.24.)

① 지부 총회

② 지부 대의원회

③ 지부 상무집행위원회(개정2016.3.24.)

④ 지부 회계감사위원회(개정2016.3.24.)

⑤ 지부 선거관리위원회

**제19조(지부총회의 구성)**

① 지부총회는 지부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지부 요구시 본부지부 임원 및 간부는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지부 총회에 갈음하여 지부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지부총회에 관한 사항은 지부 대의원회에 적용된다.

**제20조(대의원)**

① 지부의 대의원은 조합원 15명당 1명 단위로 각 선거구에서 조합원이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단수 10명 이상은 1명으로 배정한다.

②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2년을 원칙으로 한다. 차기 대의원 선출전일까지로 한다.

- ③ 결원대의원의 선출은 당해 대의원 선거구에서 보궐 선거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④ 지부장은 본부지부 대의원회에 참석하는 소속 대의원명단을 대의원회 개최 5일전까지 본부지부에 보고한다.

**제21조(지부의 총회)**

- ① 정기 지부총회(정기 지부대의원회)는 본부지부 대의원회의 개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부장이 소집한다.
- ② 정기 지부총회(정기 지부대의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부장이 지부조합원의 3분의 1이상의 결의에 의하여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 ③ 임시 지부총회(임시 지부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부장이 소집한다.
  - 1. 본부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3. 지부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소집을 결의하였을 때
  - 4. 지부조합원(지부대의원회)의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④ 3항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에 지부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았을 때에는 본부지부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 ⑤ 조합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중앙집행위원회를 거쳐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개정2017.11.23.)

**제22조(지부총회의 공고)** 지부총회(지부대의원회)의 소집공고는 회의개최 5일전에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 3일 이내에 할 수 있다.(개정2020.5.14.)

**제23조(지부총회의 기능)** 지부총회(지부대의원회)는 지부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① 지부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
- ② 지부의 예산편성 및 결산 승인
- ③ 지부의 기금설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④ 지부 조합원 징계와 가입거부에 관한 사항(개정2014.4.30.)
- ⑤ 지부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개정2014.4.30.)
- ⑥ 기타 중요한 사항

**제24조(지부상무집행위원회 구성)** 지부상무집행위원회는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장 및 부서장으로 구성한다.(개정2016.3.24.)

**제25조(지부상무집행위원회의 소집)** 지부상무집행위원회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할 때 지부장이 소집한다.(개정2016.3.24.)

**제26조(지부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 지부상무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개정2016.3.24.)

- ① 지부의 총회(또는 대의원회)에 부의할 의안 채택 및 준비에 관한 사항
- ② 지부총회(또는 지부대의원회)의 수입사항 처리
- ③ 지부 일상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④ 지부 조합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 ⑤ 지부 조합원의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⑥ 지부 노사협의회 및 지부 각종 위원회의 지부 측 안전심의(개정2020.5.14.)
- ⑦ 지부의 대의원 선거구역 결정
- ⑧ 본부지부 운영규정 제6조 제1항 3호, 동 규정 제3항, 동 규정 제61조에 따른 조합원 자격정지 및 자격 상실에 대한 결의(개정2014.4.30., 2022.3.4.)

**제27조(지부회계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

- ① 지부회계감사는 지부 대의원회 에서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부 수석회계감사가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개정2016.3.24.)
-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부지부 회계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의 경우에는 본부지부 수석회계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2016.3.24.)

**제28조(지부회계감사위원회의 기능)**

- ① 지부의 사업제반에 따른 재정 및 회계를 연 2회 이상 감사한다.(개정2016.3.24.)
- ②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사를 실시한다.
  1. 지부장의 요청이 있을 때
  2. 지부 대의원회, 지부 상무집행위원회의 요청이나 지부조합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개정2016.3.24.)
  3. 지부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9조(지부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 기능)(개정2020.5.14.)**

- ①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부 선거관리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신설2020.5.14.)
- ②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3명 이상으로 한다.(개정2020.10.28)
- ③ 지부 선거관리위원은 지부대의원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진행하며 선거관리위원 후보등록자 혹은 대의원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 참석, 후보자별로 찬반투표를 통한 참석 대의원 과반수이상 다수 득표순으로 3인을

선출하며. 최다득표자가 선거관리위원장이 되며, 차점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된다. 단, 동수일 경우 연장자를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한다.(신설2020.5.14., 개정2021.3.23., 2022.3.4.)

- ④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부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선거관리의 경우에는 본부지부 선거관리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신설 2020.5.14.)
- ⑤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은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신설 2020.5.14.)

### 제30조(회의의 성립과 결의)

- ① 지부의 제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전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부임원의 불신임은 지부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인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 제31조(회의진행)

- ① 지부 회계감사 및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지부의 제반회의의 의장은 지부장이 되며, 지부장의 위임에 따라 다른 임원이 대행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부 조합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본부지부장 또는 본부지부장이 지명하는 본부지부 임원이 의장이 된다.

제32조(지부 조합원의 징계) 조합 상벌규정 및 본부지부 운영규정 제61조(징계) 규정에 의한다.(개정2014.4.30., 2017.11.23., 2020.5.14., 2021.3.23.)

## 제 5 장 지부의 재정

제33조(의무금) 지부는 급여총액의 1%의 조합비를 본부지부에 납부한다.(개정2018.3.22.)

제34조(조합비 및 재정) 지부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① 본부지부 운영규정 제53조(조합비 및 재정)제①항에 의한다.(개정2014.4.30., 2020.5.14., 2021.3.23.)
- ② 지부의 재정은 지부의 조합비와 기부금, 특별부과금, 기타 사업수익 및 잡수익으로 충당한다.
- ③ 조합원은 본조 및 본부지부(지부) 대의원회의에서 결의된 범위 내에서 특별조합비를 급여에서 공제한다.
- ④ 조합원이 조합비를 계속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명 또는 징계사유가 되며 규정상의 권리를 제한한다.



**제35조(지부 기금)** 조합원은 조합 대의원회, 본부지부 대의원회에서 결의한 특별기금 전액을 지부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2022.3.4.)

**제36조(지부 회계연도)** 지부의 회계연도는 본부지부 운영규정 제54조(회계연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개정2021.3.23.)

**제37조(재정의 운영)** 지부의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 및 지부운영규정에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본부지부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38조(재정사업의 운영)** 지부의 재정사업에 관한 사항은 지부에서 자체 운영할 수 있다. 단, 재정사업에 대한 수입 및 지출은 지부 대의원회에 보고한다.

## 제 6 장 단체교섭 및 쟁의

**제39조(단체교섭 및 쟁의)** 지부는 단체교섭 및 쟁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정에 의거 본부지부의 공식기구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른다.

**제40조(지부의 노사협의회 및 각종 위원회 위원)** 지부의 노사협의위원 및 각종 위원회 위원은 지부장이 지명한자로 구성한다.(개정2020.5.14.)

**제41조(지부의 노사분쟁)** 지부에서 노사간에 분쟁이 예상되거나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그 원인과 결과를 본부지부에 보고하고 본부지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한다.

## 부 칙

**제1조(통상관례)** 지부 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조합 규약 및 본부지부 운영규정과 통상관례에 따른다.(개정2017.11.23.)

**제 2조 (경과조치)**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다. 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의 지부(지회)는 2013년 4월 15일자 명칭 변경에 따라 “본부지부” 로 변경되며, 지회는 “지부” 로 변경된다.

**제 3조(시행일)** 본 규정은 조합이 승인한 날부터 한다.(개정2017.11.23.)

## 부 칙(2018.3.22.)

제1조(시행) 본 규정은 다음 항을 제외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① 제6조(이동 및 파견) 및 제33조(의무금) 적용시기는 2018년 3월 23일 급여지급일을 감안하여 2018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9조지부임원의 임기 및 결원 시 처리지부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021년부터 3년으로 적용한다.

#### 부 칙(2019.3.5.)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19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9조와 관련한 연임제한 개정은 개정 당시의 산하지부장에게는 효력이 없다.

#### 부 칙(개정2020.5.14.)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20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회계규정에 나오는 서식 및 예산편성 계정과목표는 별도의 서식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개정2021.3.23.)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2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개정2022.3.4.)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22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